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교육감을 교육지원의 주체로 명시하고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 실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고 고등학교 단계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 사전 동의 없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 수준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대한 위임근거, 공표방법 등 규정 마련(안 제2조)
- 나. 교육감을 교육지원의 주체로 명시(안 제4조)
- 다. 학교 밖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교육지원의 방법 등 신설(안 제6조)
- 라.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의 방법 등 신설(안 제7조)
- 마. 학교 밖 청소년 개인정보 제공 동의 규정 삭제(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수렴 예정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령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방법으로 할”을 “방식으로 실시하되, 면접조사·설문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연구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

체(교육감을 포함한다)”로 한다.

4.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로의 진학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6조, 제6조의2 및 제7조를 각각 제8조, 제8조의2 및 제9조로 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자립교육의 방법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교육은 강의, 시청각 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 밖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교육은 경제, 법률, 문화 등 관련 정보와 기초적인 소양을 습득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 밖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전문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건강진단의 실시 등) ① 법 제11조의2에 따른 건강진단은 학교 밖 청소년 중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②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방법, 건강검진 결과 등의 통보 절차, 그 밖에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매년 건강진단의 실시기간 및 실시장소 등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청소년,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이하 “청소년지도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신청서에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지도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⑥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건강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건강진단을 신청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청소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질병의 치료 등이 필요한 해당 청소년

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등)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이 아닌 기관 또는 단체가 신청한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이 신청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제8조의2(지원센터의 평가) ① 법 제12조의2에 따른 지원센터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환경의 적정성

2.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3. 사업내용의 적정성

4. 그 밖에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평가를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종전의 제6조의2에서 이동]

제9조(종전의 제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우”를 “경우나 졸업 예정으로 상급학교에 미진학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될 경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시행규칙 제6”을 “시행규칙 제8”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시행규칙 제6”을 “시행규칙 제8”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기관·단체·법인명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인력현황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종사자 : 총 명 (청소년지도사 명, 청소년상담사 명, 기타 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신청인 제출서류	1.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시설 명세서 1부 4. 전문인력 보유현황 자료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이 아닌 기관 또는 단체가 신청한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이 신청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사	➔	지 정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

제 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서

1. 기관·단체·법인명:
2.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3.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4. 주소: (전화번호:)
5. 지원센터 소재지:

위 기관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최종학교명		
보호자	성명			관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인	성명			관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 귀하
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신청인 제출서류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 여성가족부, 시·도,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u>방법으로</u> 할 수 있다.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방식으로</u> 실시하되, <u>면접조사·설문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u> <u>방법을</u> 사용할 ---.
<u><신 설></u>	③ <u>여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연구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u>
<u><신 설></u>	④ <u>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u>
<u><신 설></u>	⑤ <u>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u>

제4조(교육지원의 방법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에 따른 교육지원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1. ~ 3. (생략)

<신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법 제9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취학, 재입학 또는 진학을 한 경우 학교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하여 해당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정한다.

제4조(교육지원의 방법 등)

① -----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로의 진학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② -----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

-----.

제6조(자립교육의 방법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교육은 강의, 시청각 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

<신 설>

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 밖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교육은 경제, 법률, 문화 등 관련 정보와 기초적인 소양을 습득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 밖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전문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건강진단의 실시 등)

① 법 제11조의2에 따른 건강진단은 학교 밖 청소년 중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②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방법, 건강진단 결과 등의 통보 절차, 그 밖에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매년 건강진단의 실시기간 및 실시장소 등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청소년,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이하 “청소년지도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 신청서에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지도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

	<u>하게 하여야 한다.</u> ⑥ <u>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건강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건강진단을 신청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⑦ <u>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청소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⑧ <u>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질병의 치료 등이 필요한 해당 청소년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제6조 · 제6조의2</u> (생략)	<u>제8조 · 제8조의2</u> (현행 제6조 및 제6조의2와 같음)
<u>제7조</u> (지원센터와의 연계) ① (생략)	<u>제9조</u> (지원센터와의 연계)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장 또는 단체장은	② -----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청소년의 법 제15조제3항 각 호의 개인정보를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u>이 경우 학교장 또는 단체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u> 1. 학교장: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u>경우</u> 2. (생략)	----- ----- ----- -----<u>. <후단 삭제></u> 1. ----- ----- <u>경우나 졸업 예정으로 상급학교에 미진학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될 경우</u> 2. (현행과 같음)
--	---